서울특별시 서남물재생센터 관리대행 동의안

의 안 번 호	434

제출년월일 : 2019년 2월 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서남물재생센터는 강서구 등 9개구 1개시 발생 하수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87년 최초 직영운영 이후 2001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업체(주-서남환경)에서 위탁 관리하여 왔으며 2019. 6. 30. 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나. 직영과 위탁으로 이원화된 물재생센터 운영·관리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4개 물재생센터 "공단 전환" 완료시까지 수탁사 공개모집에 의한 운영업체 변경시 운영의 일관성 훼손 등 혼란을 감안

다. 대규모 하수처리시설 장기간 운영으로 능력이 검증된 기존 수탁업체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탁사무 : 물재생센터 운영 및 물재생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등
○ 위탁기간 : 2019. 7. 1. ~ 2022. 6. 30.
(단, 위탁기간 중 공단설립 시 계약해지)
○ 소요예산 : 연 77,149백만원(최근 3년 평균)
○ 수탁사 선정 : 재계약

나. 시설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강서구 마곡동 91)

○ 부지면적 : 1,032천㎡ (건물면적 : 64개동 80,152㎡)

○ 시설용량 : 163만㎥/일

○ 차집관로 : 95km(7개소)

○ 처리구역 : 143.23㎢(9개구 1개시)

- 전역 : 영등포·관악·동작·구로·양천·금천·강서구
- 일부 : 강남·서초·광명시

다. 주요 위탁내용

○ 물재생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로 및 중계펌프장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 하수 처리 및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등

라.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근거

○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 그간의 위탁경과 〉

◇ **서남**물재생센터 개원 : 1987. 6. 30

◇ 최초위탁(1차) : 2001.8.1 ~ 2004.6.30.〔수탁업체 : ㈜서남환경〕

◇ 재 계 약(2차) : 2004.7.1 ~ 2007.6.30.〔 " 〕

◇ 재 계 약(3차) : 2007.7.1 ~ 2010.6.30.〔 " 〕

◇ 재 계 약(4차) : 2010.7.1 ~ 2013.6.30.〔 " 〕

◇ 재 계 약(5차) : 2013.7.1 ~ 2016.6.30.〔 " 〕

◇ 재 계 약(6차) : **2016.7.1 ~ 2019.6.30.**〔 " 〕

마. 재계약 사유

○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장기간 운영경험과 노하우 축적한 국내 유일 업체**

- 현 수탁업체인 ㈜서남환경은 1997년 IMF 사태 이후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위탁 권장에 따라 기존 운영인력인 공무원들이 고용승계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약 20여년간 6차에 걸쳐 재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며, 대규모 하수처리시설(163만톤)의 장기간 운영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국내 유일의 수탁업체임.

○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 운영실적 우수(평균 89점 이상)**

- 위탁 기간 중(´15.1.1.~´17.12.30.) 외부전문가 참여한 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 결과 운영실적이 우수(평균 89.46점)한 것으로 평가됨.
- 운영성과 목표(계획) 대비 실적(최근 3년간)

구 분	목 표	실 적	달 성 율
2015년	90점 이상	93.06점	100.0%
2016년	90점 이상	87.75점	97.5%
2017년	90점 이상	87.57점	97.3%

- 환경부 지침의 개선대상 기준인 70점보다 우수하게 평가되었으며, 또한 직영센터(평균 85.57)에 비해 우수하게 운영된 것으로 조사됨.

〔센터별 성과평가 결과('15~'17)〕

평 가 분 야	직영 및 전체위탁			
	중랑(직영)	난지(직영)	탄천(위탁)	서남(위탁)
평균점수(3년간 평균)	83.21	87.94	91.33	89.46

○ **2017년 탄천물재생센터 재계약 사례 적용**

- 2017년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 (´15.1.1. ~ ´17.12.31.)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업체선정 방안을

검토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였으나, 시의회에서 기존 탄천환경이 재계약 실패시 법인 해체로 인한 고용 등 사회 문제 대두 및 법적 분쟁 소지 가능성과 4개 센터 운영체계를 공단으로 통합을 추진 중인 현 상황을 감안하여 공단화 시까지 기존과 같이 재계약 추진토록 함.

바. 주요 운영성과

○ **운영개선 및 기술개발 노력을 통한 물재생시설 운영의 효율성 증대**

- 특허 : 2건(슬러지처리용 약품 혼합시스템 외 1건 : 서울시로 권리이전)

○ **창의적인 시설 운영으로 예산 절감실행('16년 ~ '18년)**

- 잉여소화가스 활용 열병합발전설비 운영에 따른 서울시 수입증대 : 6,300백만원
- 에너지 절감 노력을 통한 전력비 절감 : 58백만원
- 음식물 침출수 처리비용 수입 증대 : 4,613백만원

○ **물환경 연구소 운영으로 현장 적용 가능한 연구개발 추진**

- ´16년 : 하이드로프레스 탈수기와 건조기를 이용한 슬러지 탈수/ 건조기술 개발(롯데건설 등 4개사 공동연구) 외 1건
- ´17년 : 하수찌꺼기 소각재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인(P) 회수시스템 개발 (서울보건환경연구원 공동연구) 외 1건
- ´18년 : 총인 수처리약품 현장실증실험 연구

○ **대외기관 수상을 통한 하수처리시설 운영능력 신뢰도 제고**

- ´16년 :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 ´17년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자발적 협약이행 실적평가 수도권 대기환경 우수상 수상

  폐기물 적정관리 등 환경보전에 기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표창
- ´18년 : 교육기부 진로체험제도 모범적 운영기관 인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간위탁〕

○ 하수도법 제19조의2

▸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부칙〕

▸ 제2조(의회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4조의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물재생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하여 물재생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하수도법령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능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재계약〕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④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물재생시설 관리·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위탁기간 연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 제10조(수탁기관 선정) ② 시장은 위탁대상 업무 경험자들이 동 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합당한 법인을 설립하고 시장이 위탁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당해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최근 3년간('15~'17) 관리대행 운영성과평가 결과 평균점수가 89.46점으로 환경부 지침의 개선대상 기준인 70점보다 높게 평가되었으며,

직영센터(평균 85.57)에 비해 운영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작성자 : 물재생시설과 위탁관리팀 마권택(☎2133-3844)